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25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월 6일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2.1.25.)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제안이유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반영 및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력 증원, 지방임기제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1) 정원의 총수: 1,716명 ⇒ 1,743명(+27명)
- 2) 집행기관의 정원: 1,685명 ⇒ 1,706명(+21명)
-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 37명(+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 3)

- 1) 정원 총계: 1,716명 ⇒ 1,743명(+27명)
- 2) 일반직 계: 1,711명 ⇒ 1,738명(+27명)
 - 5급: 73명 ⇒ 75명(+2명)
 - 6급 이하: 1,628명 ⇒ 1,653명(+25명)

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1. 17. ~ 2022. 12. 7.)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광호)

가. 개정 취지

-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력 증원 등을 반영한 정원조정을 통해 능동적·안정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에서
 - 정원의 총수를 기존 1,716명에서 1,743명으로 27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5명에서 1,706명으로 21명 증원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에서 37명으로 6명 증원
- 안 제3조 관련 별표3에서
 - 정원 총계를 1,716명에서 1,743명으로 27명 증원
 - 일반직 계를 1,711명에서 1,738명으로 27명 증원
 - 5급 73명을 75명으로 2명 증원
 - 6급 이하 1,628명을 1,653명으로 25명 증원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및 「지방자치법」 시행(2022. 1. 13.)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¹⁾ 인력 확보 등 효율적 정원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43명으로 하여

- 집행기관의 정원이 1,706명으로, 현행 정원(1,685명)보다 21명 증가하고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37명으로, 현행 정원(31명)보다 6명 증가한 것임.

※ 총 증가인원: 행정직 12명, 지적 3명, 기계 2명, 보건 4명, 토목 3명, 전기 1명, 환경 2명

▷ 분야별 정원조정 세부내역(붙임 1 참조)을 살펴보면,

- 공적 의정활동 지원²⁾, 임대차 신고제 도입³⁾, 기계설비법 시행⁴⁾ 등

1)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관련 주요 사항

-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 명 칭: 정책지원관
- 직 무: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례위임)
- 채용인원: 총 11명 배치 가능(2022년 5명, 2023년 6명)
 - ※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고 규정
- 임용형태: 일반직 지방공무원(임기제는 일반임기제만 가능)
- 직 급: 7급 이하
- 임용절차: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

2)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분리(인사 업무 인력 1명) 및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정책지원 전문인력 5명)으로 총 6명

3) 부동산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증빙자료 검토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업무 인력 3명

4) 「기계설비법」 제정(2020.4.18.)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사용전 검사 등 업무의 자치구 이관으로, 기계설비업무 전담공무원 1명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이 10명이며,

-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 8명
[방역관리 1명, 방역 소독 1명, 역학조사 3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및 과태료 부과 1명, 확진자 밀접 접촉자 관리 2명]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사업추진 및 민원상담⁵⁾을 위해 2명
- 강서구 내 대규모 자동차 매매단지의 지속적인 입점 및 이에 따른 민원 신청 증가로 자동차등록민원 인력 총원 2명
-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목, 기계 등 전문 인력 2명
- 경제발전과 환경보존 균형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⁶⁾을 위한 2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업무, 생활환경 개선 업무, 강서구 에너지 사업 추진 업무 등]
- 지하안전관리 담당인력⁷⁾ 총원 1명임.

— 안 제3조는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으로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와 지방임기제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소 지방임기제 공무원(한의사, 치과의사) 2명을 6급에서 5급으로 조정]
- 5급 73명을 75명으로 2명, 6급 이하 1,628명을 1,653명으로 25명 증원함

5)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 후보지 검토 및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 업무에 대한 민원증가 예상

6)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시행에 따라 강서구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및 통합 시스템 관리 운영(안전점검 기준 및 영향평가 등 심의서류 검토) 인력 필요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규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력 관리의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 구축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1

정원 조정 세부 내역

□ 구 총 정원 조정(안 제2조) : 1,716명 → 1,743명(증 27명)

구 분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현 행	1,716	1,685	31
변 경	1,743	1,706	37
증 감	+27	+21	+6

※ 분야별 정원 조정 세부내역

연번	세부내역	정원(명)	비고
	(합계)	+27	
1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1	행정 +1
2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5	행정 +5
3	임대차신고제 도입	3	지적 +3
4	기계설비업무 전담 인력	1	기계 +1
5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8	행정 +4, 보건 +4
6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2	토목 +2
7	자동차등록민원 인력 충원	2	행정 +2
8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2	전기 +1, 기계 +1
9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	2	환경 +2
10	지하안전관리 담당인력	1	토목 +1
11	지방임기제 공무원 직급 조정	-	5급 +2, 6급 이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 세출예산 순증(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나.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하여 비용 추계

다. 행안부(서울시) 신규임용자 인건비 산정 기준 및 5, 6급 평균 봉급액(연봉액)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출	971,957	996,220	1,013,153	1,030,385	1,047,894	5,059,609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비용	산출내역	비고
(합계)	971,957천 원		
7 급	290,785천 원	58,157천 원 × 5명	7급 14호봉 기준
9 급	660,000천 원	30,000천 원 × 22명	서울시 신규임용자 인건비 산정 기준
기 타	21,172천 원	10,586천 원 × 2명	5, 6급 조정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자체수입	971,957	996,220	1,013,153	1,030,385	1,047,894	5,059,609

6. 작 성 자 : 행정지원과 김성훈(☎ 2600-603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